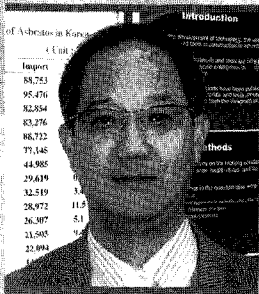


국가건강검진에서 근로자 건강검진의 특수성



성균관의대
김 동 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16인 이상 사업장은 정기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1961년 근로자보건관리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오늘날의 근로자 건강진단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때 그 골격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5년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도 기존의 사업주 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표 1〉 2008년도 국가 일반건강검진에서 직장가입자의 수진현황

	국가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2차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대상인원	수검인원
계	15,124,755	9,878,548	3,893,203	1,847,391
남	8,315,473	5,596,609	2,321,779	1,157,880
여	6,809,282	4,281,939	1,571,424	689,511

	직장가입자(근로자 본인)			
	1차 검진		2차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대상인원	수검인원
계	7,895,541	6,681,068	2,257,379	1,193,752
남	5,250,173	4,427,802	1,694,995	911,640
여	2,645,368	2,253,266	562,384	282,112

2008년도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진자는 총 9,878,548명으로 이중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수진인원은 6,681,068명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들이며, 검진 자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절차에 따르지만 사후관리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고 있다.

최근 해가 갈수록 국가 일반건강검진에서 비 직장인들의 수검률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은 여전히 직장가입자들이다.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가건강검진에서 추구하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지역사회 성인들, 특히 40세 이상의 주민들의 심혈관계 질환을 목표 질환으로 설정하였고, 지역사회 건강검진기관에 내원검진을 원칙으로 하며 검진관정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사업장 근로 환경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근로자들 중 일부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데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동시에 받는 경우, 현재 별개의 검진으로 출력물 및 관정이 따로 나가야하는 실정이다.

국가 일반검진의 경우, 2010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의심자들에 대해서만 혈압 반복측정 및 식전혈당측정을 재검사하고 있다. 고혈압 및 당뇨병은 서서히 진행되며 혈압측정 및 혈당측정은 사내 부속의원이나 자가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 검사이다. 오히려 반복되는 직장근무시간으로 인하여 내원 2차 검진이 어려운 간기능, 신기능, 고지혈증 등의 과거 2차 검진 항목들의 반복검사 필요성은 여전히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 일반검진에서는 지역사회 주요 연령층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의 항목들이 40세 이상의 연령층에 맞게 구성되었다면 당연히 근로자들도 40세 이상에만 한정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젊은 젊은 연령층을 위해서는 별도의 검사 항목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특성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집단이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검진절차를 마련하던지 아니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건강진

단에 대한 절차가 이미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두 집단간의 명확한 특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또는 지역사회 주민에 포커스가 맞추어 국가 일반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한 집단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혹시 이러한 건강검진의 대상별 획일적 실시에 대한 모순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상호 협력 부족 및 근로자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산업의학계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학계의 이해부족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